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May 20,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 공정거래 동향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내용
I. 보도자료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결합 동향 4. 21.	• (이슈) 반도체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4. 21. 최근 글로벌 반도체 주요사업자들과 관련한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번 달 2건을 승인하였고 3건은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힘
5개 오픈마켓 사업 자들과의 자율 제품 안전 협약 체결 4. 22.	• (이슈) 오픈마켓의 소비자 안전 강화 • (주요내용) 공정위는 4. 22.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및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 27.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i)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ii)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iii)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의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슈	주요내용
<u>온라인플랫폼법 적용대상 사업자 등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u> 4. 27.	• (이슈) 플랫폼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 규제대상 기업이 80개에 이르고, 규제대상 기업들이 모든 입점업체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언론사 보도에 대하여, (i) 약 30여개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ii)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
<u>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u> 4. 28.	• (이슈)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i)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ii)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 기준 구체화, (iii)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iv) 서면발급 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u>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u> 4. 29.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주요내용) (i)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ii)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u>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u> 4. 29.	• (이슈)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점검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난해 이루어진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점검할 예정
<u>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u> 4. 29.	• (이슈)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 5. 1. 자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발표
II. 주요 뉴스기사	
<u>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u> 4. 17.	• (이슈)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 (주요내용)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i)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ii) 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iii)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만드는 것이며, (iv)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

이슈	주요내용
방통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4. 21.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주요내용) 방통위는 4. 15.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법 적용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약관 점검 4. 23.	• (이슈)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약관 점검 • (주요내용) 공정위는 정부부처 합동 암호화폐 불법행위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할 계획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개보위의 개선 권고 4. 28.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개보위는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게 개선권고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짐
III. 국회 발의법안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안) 4. 20.	• (이슈) 플랫폼 규제 • (주요내용)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4. 21.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강화하고, (ii) 공정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iii)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공청회 개최 4. 22.	• (이슈)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공청회 개최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는 지난 22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 제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정위에서 공정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 4. 22.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맹분야 공정위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나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주요 공정거래 동향

I. 보도자료

1. 반도체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 동향 (4. 21.)

- 공정위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 다수 진행중이며,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2건은 심사를 완료하여 승인하였고, 3건은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힘
- 5건 중 (i)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심 인수 건 및 (ii)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 건은 승인하였고, (iii)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 (iv)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및 (v) 엔비디아의 ARM 주식 취득 건은 현재 심사 중

[주요 내용]

• 반도체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 추세

- **(반도체 시장 현황)**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분야의 발전, 데이터센터의 증가, 비대면경제의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급증함.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에도 전년 대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수금액이 10조원을 넘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다수 진행 중
- **(결합의 배경 및 특징)** 반도체 시장은 설계, 프로세서(CPU, GPU),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분야별 강자가 비교적 뚜렷한 분업구조를 보임. 그러나 최근에는 동종업체 간의 수평적 결합 이외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5G 등 새로운 혁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종업체 간 수직적·혼합적 결합의 양상이 빈번해짐

• 동종 업체간 기업결합 심사 현황

-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심 주식취득 건)** 아날로그 디바이스(미국)는 2020. 7. 맥심(미국)의 주식 69%를 210억달러 (약23조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0. 11.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2021. 4. 승인
 - **(결합목적)** 소리, 빛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분리·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 분야의 대표주자인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자동차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맥심과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동 건 인수를 추진
 - **(경쟁제한성)** 공정위는 관련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점유율 증가폭이 6%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업결합 승인
-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주식취득 건)** 글로벌 웨이퍼스(대만)는 실트로닉(독일)의 주식 50% 이상 (30.8% + 추가공개매수)을 45억 달러(약 5조원)에 취득하기 위해 2021. 1.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2021. 4. 이를 승인

*주식취득 등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

- **(결합목적)** 반도체 집적회로(IC)의 주요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시장 3위 사업자인 글로벌 웨이퍼스는 동 인수를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실트로닉의 강점인 5G, IoT 분야에서의 신규 수요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인수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경쟁제한성)** 공정위는 (i) 관련 시장에 다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ii) 수요자가 대형 반도체 기업(삼성, TSMC, 인텔 등)이며 (iii) 결합당사회사는 결합 후 시장점유율 28%로 2위가 되지만, 1·3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각 5%p 이내에 불과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이 지속될 것임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등 사업부문 영업양수 건)** SK하이닉스는 2020. 10. 인텔(미국)의 낸드플래시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 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
- **(결합목적)** SK하이닉스는 DRAM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보강하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하여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심사경과)** 공정위는 현재 심사 중이며, 해외에서는 미국이 심사를 완료하여 2020. 12. 승인하였고, EU,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등 6개국이 심사를 진행 중

• 이종 업체간 기업결합 심사 현황

-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CPU와 GPU 등을 제조하는 AMD(미국)는 2020. 10. AI 및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제조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
- *기존 반도체와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로서 항공, 자동차, 통신 분야 등 분야에서 주로 사용됨
- **(결합목적)** AMD는 자일링스를 인수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 자율주행차, 항공, 방위 산업 등의 최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 **(심사경과)**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는 최근 미국이 심사를 완료하여 2021. 1. 승인하였고, EU, 중국, 영국 등 8개국이 심사를 진행 중
- **(엔비디아의 ARM주식취득 건)** GPU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미국)는 2020. 10.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ARM(영국)을 400억 달러(약 44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여 현재 심사 중
- **(결합목적)** 엔비디아는 위 기업결합을 통해 ARM의 CPU 설계 기술을 자사의 GPU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로봇 공학 등에서 AI 컴퓨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심사경과)** 공정위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분야의 1위 업체인 ARM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을 봉쇄할 가능성 등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 등이 심사 진행 중

2. 5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4. 22.)

- 공정위는 4. 22.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및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5개 오픈마켓 사업자(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이 오픈마켓 직구·구매대행을 통해 너무나 쉽게 소비자에게 배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게끔 유도하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자율 제품안전 협약의 주요내용]

- **(모니터링 및 차단)**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유통·판매 차단·제한 및 재유통 방지 등 노력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정부기관 및 입점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 제공
- **(입점업체의 법령 준수 촉진)** 소비자종합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법령을 오픈마켓에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의 준수를 촉진
- **(제재조치 마련)**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연락망 제공)**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 **(삭제 조치)**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 **(사전 협의)**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
- **(성실 이행)**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판매 차단 또는 제한 등 조치 성실 이행

3.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 27.)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의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i)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가맹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적절한 마케팅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ii) 가맹자 사업자단체 등록 제도에 대하여는 사실상 ‘정부 공인 자영업 노조’가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점주와 사측의 갈등이 깊어져 대형 글로벌 프랜차이즈업체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

[주요 개정 내용]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제12조의6)

- (개정 배경)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가맹점주가 해당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
- (개정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제14조의2)

- (개정 배경) 현행법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회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회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음
- (개정 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하였을 것 등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 (제29조의2, 제41조)

- (개정 배경) 현행법은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개정 내용)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4. 온라인플랫폼법 적용대상 사업자 등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 (4. 27.)

- 온라인플랫폼법을 다룬 [동아일보 4. 27. 자 기사](#)에서 (i) 규제 대상 사업자 수가 EU, 일본 등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많고, (ii)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업자들의 우려를 보도
- 공정위는 (i) 온라인플랫폼의 적용대상은 약 30여개 사업자로 추산되고, (ii) EU의 유사 규제에는 규모 요건이 없어 EU가 10개 온라인플랫폼만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iii) 온라인플랫폼법은 계약당사자인 입점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

[주요 해명 내용]

• 온라인플랫폼법 규제대상 사업자 수 관련

- **(보도 내용)** 국내 온라인플랫폼 기업 중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으로 온라인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 수가 80여개에 이른다고 보도
- **(해명 내용)** 공정위는 (i) 온라인플랫폼법은 전체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이 아닌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 수는 약 30여개에 불과하고, (ii) 법률에서는 규모 요건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매출액·거래금액 등 기준은 충분한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시행령 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반박함

• EU 디지털시장법과의 비교 관련

- **(보도 내용)** 온라인플랫폼법의 모델로 삼은 EU ‘디지털시장법’은 유럽 내 매출 65억 유로 이상 혹은 기업 가치 650억 유로 이상인 10개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여, 온라인플랫폼법은 이에 비해 규제대상이 과도하게 넓다는 취지로 보도
- **(해명 내용)**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EU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이며, 해당 규칙은 규모 요건이 없어 오히려 온라인플랫폼법보다 적용범위가 넓다고 반박

*EU는 규모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칙’ (2020. 7. 12. 시행)에 더하여 대규모 플랫폼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사전규제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제정안을 추가로 발표 (2020. 12.)

• 영업비밀 유출 우려 관련

- **(보도 내용)** 온라인플랫폼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모든 입점업체에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므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공정위는 (i) 상품노출순서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인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알고리즘 등 영업비밀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하였고, (ii) 이러한 상품노출순서 주요 결정 기준은 입점업체의 매출액 등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 거래조건으로 해외 입법례*에서도 유사 규정이 확인된다고 반박

*EU 공정성·투명성 규칙 제5조 및 일본 플랫폼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 등

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4. 28.)

- 공정위는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i)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ii)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iii)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iv) 서면발급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4. 29. 부터 2021. 5. 20. 까지 행정예고. 종래 명확한 집행기준이 없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기준이 구체화되었고, 서면미교부와 관련하여 규제여부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정비되었음

[주요 개정 내용]

•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 개정 시행령은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2개 항목**을 수정함
 - * (신설 항목)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
 - ** (수정 항목)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이에 맞춰 지침 개정안은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
 - (경감사유별 집행기준) 피해구제비용 및 표준계약서 사용비용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 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하여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 (요청 대상기관 선정) 벌점 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을 실시한 기관 등의 순서대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함

•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 개정 시행령에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위가 시행한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한 경우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지침 개정안은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 및 요청대상 조치내역을 규정
 -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
 - (요청대상 조치내역) 조치대상사업자명단, 조치시점, 구체적인 조치내용 등

• 서면발급 규정 정비

- 추가공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하고, 추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

6.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29.)

- (i)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ii)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개정 내용]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제 2조, 제6조의3제1항)

- **(배경)**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 내용)**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을 1곳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공정위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함. 다만, 가맹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등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제3조 제2항)

- **(배경)**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오히려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주가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 내용)**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 (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

7.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4. 29.)

- 공정위는 지난해 이루어진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1개월(5. 3. ~ 6. 4.)간 실시할 예정

8.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4. 29.)

- 공정위는 2021. 5. 1.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임

* (신규지정-8개)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 (지정제외-1개) KG

** (신규지정-7개)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 (지정제외-1개) 대우건설

-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 효성의 동일인을 변경
-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신규지정집단들의 동일인도 확인함
 -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향후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동일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II. 뉴스기사

1.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맞춤형 광고’ 규제 관련 문제제기 (4. 17.)

-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판매사업자가 맞춤형 광고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18조 제3항)
- 이에 대해 4. 1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70회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i)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ii) 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iii)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이미 있음에도 추가 규제를 만드는 것이며, (iv)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

2. 방통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4. 21.)

- 공정위는 3. 5.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 방통위는 4. 15. 공정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81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운데 판매 중개에 한해 규율하는 제도로, 모든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 관련 활동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관련 항목의 수정·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3.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약관 점검 (4. 23.)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4. 16. 열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달부터 6월까지 정부부처 합동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음
- 이에 공정위는 2018년 이후 3년만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i) 부당한 입출금 제한, (ii)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iii)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iv) 광범위한 면책 등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불공정약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개보위의 개선 권고 (4. 28.)

-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고, 지난 14일 개보위 6차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와 개인 정보의 소비자 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링크)
- 28일 개보위 7차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 대하여 (i)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함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수집하는 정보를 연락처 및 거래정보로 최소화하고, (ii) 분쟁의 사적해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공정위에 권고.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짐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는 중고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i)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수집하고, (ii)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III. 국회 발의법안 등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안) 국회제출 (4. 20.)

-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공정위안과 민병덕 의원안을 비교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의규정 관련:** 공정위안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민병덕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대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등의 정의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음
 - **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민병덕 의원안은 공정위안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수정·추가(아래 강조 표시 부분: 추가된 기재사항)

공정위안의 필수적 기재사항	민병덕 의원안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부담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2. 중개계약 기간, 계약 갱신 절차,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 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5. <u>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u> 6. <u>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u> 7. <u>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 등의 판매가격, 판매방식, 판매량, 배송방식, 결제방식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u> 8. <u>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u> 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담 기준 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 11. <u>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u> 12. <u>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의 총합 형태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u> 13. <u>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u> 14. 그 밖에 중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계약의 변경, 제한·중지 및 해지 관련:**

- **(계약의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위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및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하나, 민병덕 의원안은 최소 15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
- **(계약의 제한 및 중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공정위안은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및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민병덕 의원안은 최소 30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
- **(계약의 해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정위안은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민병덕 의원안은 최소 6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

• **계약 기간 및 갱신 관련:** 공정위안은 계약 기간 및 갱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병덕 의원안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전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이상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규정

• **재화등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관련:** 공정위안은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병덕 의원안은 (i)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의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ii) 기한 도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단체소송 관련:** 공정위안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의 구성 및 단체소송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병덕 의원안은 (i)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ii)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iii) 법원에 중개계약 위반행위 및 변경,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불공정행위 및 보복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동의 의결 관련:** 공정위안은 동의의결에 대해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병덕 의원안은 동의의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손해배상책임 관련:** 공정위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병덕 의원안은 그에 더해 법원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금지청구 관련:** 공정위안은 금지청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병덕 의원안은 이 법에 대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4. 21.)

-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고, (ii) 공정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영업 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iii)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안 제25조의4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9조) 이 신설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3. 국회 정무위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공청회 개최 (4. 22.)

- 국회 정무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들 중 의원안 5건* 및 공정위안 1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공정위안을 설명

*송갑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배진교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 공정위는 공정위안에 대하여, (i) 규제강도 측면에서, 외국 규제는 기업결합 시 민감한 사안까지 요구하는 것에 비해 규제 강도를 낮춘 측면이 있고, (ii) 입법절차 측면에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10 여차례 이상 조사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iii) 적용대상 측면에서, 대상 플랫폼 사업자는 30여개로 예상되고, 스타트업은 적용대상 매출액·거래액에 도달하기 어려워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설명

[공청회 진술인 의견의 주요 내용]

- **(법제연구원 김윤정 법제조사팀장)** 현재 오프라인 중심의 법제 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언함. 또한 계약서만 적절히 작성되어도 갑을관계 분쟁의 대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상의 계약서 관련 규제는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온라인플랫폼시장은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관련 시장에서 이미 경쟁이 활발하고 경쟁상대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인바, 국내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함. 또한 현행 규제체계만으로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구현이 가능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불충분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
- **(가천대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또는 거래액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였고, 법안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 상세히 검토하여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사용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플랫폼이 최저가보상제 도입을 위하여 입점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i) 계약서 작성 의무 적용대상 확대, (ii) 검색·배열기준 결정원칙 변경시 기준 공개, (iii) 계약변경시 사전통지의무 부과 및 (iv)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부여를 입법할 것을 촉구

4.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 (4. 22.)

-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맹분야 공정위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